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433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법률용어 일괄정비(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5)

- 1) 사업주와 달리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시적인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 발생
- 2) 도급인의 법령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16. ~ 7.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중 “자를 포함한다”를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6조제2항제3호나목 및 마목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87조제3호 중 “함유한 페인트(함유된)”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함유한 혼합물(함유된)”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으로 한다.

제88조제13호 및 제14호 중 “함유한 혼합물(함유된)”을 각각 “포함한 혼합물(포함된)”으로 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중 “함유”를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함유된”을 “포함된”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함유되어”를 각각 “포함되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함유된”을 각각 “포함된”으로 한다.

제109조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표 5 제23호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란 중 “상시근로자 3천명 미만”을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라목 중 “법 제125조제1항”을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 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 는 <u>자의</u>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노무를 제공하는 <u>자의</u>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 2. (생략)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 ----- -- <u>사람</u> ----- ----- ----- ----- ----- 1. ----- <u>사람</u> ----- ----- ----- 2.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 (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 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 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 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근로자(이 조에서만 법 제77조 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하는 <u>자를 포함한</u> <u>다</u>),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 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 ----- ----- ----- ----- ----- ----- ----- ----- ----- ----- <u>사람을 포함한</u> <u>다</u> ----- ----- -----

등 협조해야 한다.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생략)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라. (생략)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4. ~ 7. (생략)

-----.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사람

다.·라. (현행과 같음)

마. -----

----- 사람

4.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 물질)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2. (생 략)

3. 백연[1319-46-6]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벤젠[71-43-2]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 ~ 7. (생 략)

8.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 10. (생 략)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 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

③ (현행과 같음)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 물질) -----

-----.

1. 2. (현행과 같음)

3. -----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

--

4. -----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

--

5. ~ 7. (현행과 같음)

8. -----
-----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

--

9. 10. (현행과 같음)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다.

1. ~ 12. (생 략)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생 략)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생 략)

②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

1. ~ 12. (현행과 같음)

13. -----

----- 포함
한 혼합물(포함된 -----

14. -----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

--

15. (현행과 같음)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포함-----

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4조(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① 법제1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89조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

2. -----

----- 포함된 -----

제94조(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① -----

----- 포함되어 -----

-----.

1. -----

----- 포함되어 -----

2. -----
----- 포함된 -----

3. -----
----- 포함된 -----

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 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생략) ② (생략)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 원)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 ~ 4. (생략) 5.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노무 를 제공하는 <u>자</u>의 건강을 유 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 영에 관한 지원 업무 6. ~ 14. (생략)	----- ----- -----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 원)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사람</u>----- ----- ----- 6. ~ 1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690